

의안번호	2211360
의 퇴 인	박용갑의원
회 답 일	2025.7.23.
추 계 번호	25D3609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중위소득(1인가구)의 40%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6,159억 1,600만원(연평균 5,231억 8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참전 명예 수당	지급대상자 (A, 명)	99,968	91,171	83,148	75,832	69,159	—	—
	수당단가 차액 (B, 천원)	285	440	615	657	700	—	—
	개월 (C, 월)	12	12	12	12	12	—	—
	추가재정소요 (D=A×B×C)	341,721	481,421	614,050	597,444	581,280	2,615,916	523,18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참전명 예수당)	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중 1인가구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 (제7항)	의무규정
2		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외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(제8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참전명예수당)	○ (참전명예수당)	-
2		× (그 외의 수당)	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할 수 있는 그 외의 수당은 그 지급액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마련한 명예수당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, 현시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질 명예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과 현행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단가 차액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곱하여 추계함
 -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(2025년 기준, 1인가구, 2,392,013원)의 40%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
 - 현행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1)에 따르면,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은 2025년 기준 45만원임
- 본 추계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2024년 기준 인원(120,190명)에 최근 5년(2020~2024년) 연평균증감률(△8.80%)을 적용하여 추정함

[표 2]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증감률
인원	173,733	161,577	146,932	132,479	120,190	△8.80%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1) 제7조(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5만원으로 한다.

[표 3]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추정: 2026~2030년

(단위: 명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연평균증감률
인원	99,968	91,171	83,148	75,832	69,159	△8.80%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본 추계에서 개정안과 현행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단가 차액은 개정안에 따른 기준중위소득(1인가구)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현행법에 따른 월 지급액 단가를 차감하여 추정함
- 안 부칙 제2조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은 법 시행 후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2026년은 중위소득의 30%, 2027년은 35%, 2028년 이후 40%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4] 참전명예수당 단가 차액 추정 : 2026~2030년

(단위: 천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
참전명예수당 단가 (월 지급액)	개정안 ²⁾	768	958	1,171	1,252	1,339
	현행 ³⁾	483	518	555	596	639
	차액	285	440	615	657	700

주: 참전명예수당 단가는 2025년 기준 금액에 최근 5년(2021~2025년) 연평균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한 것임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2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(1인가구): 2021~2025년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증감률
기준중위소득(원)	1,827,831	1,944,812	2,077,892	2,228,445	2,392,013	6.96%

3)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: 2021~2025년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	연평균증감률
참전명예수당(원)	340,000	350,000	390,000	420,000	450,000	7.26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참전명예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과 현행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단가 차액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곱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준중위소득(1인가구)의 40%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조 6,159억 1,600만원(연평균 5,231억 8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참전 명예 수당	지급대상자 (A, 명)	99,968	91,171	83,148	75,832	69,159	-	-
	수당단가 차액 (B, 천원)	285	440	615	657	700	-	-
	개월 (C, 월)	12	12	12	12	12	-	-
	추가재정소요 (D=A×B×C)	341,721	481,421	614,050	597,444	581,280	2,615,916	523,18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현행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연평균 증감률, 기준중위소득 및 참전명예수당의 인상률 등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